

경운대학교 국내·외 현장실습학기제수업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칙」 제20조 제1항의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3.01.>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대학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란 학생들이 현장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주관부서"라 함은 경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교과목의 이수) ① 현장실습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와 현장실습 업체간에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서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수업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한 경우(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출결관리) 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결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이수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법정공휴일
2. 참정권 행사일

3. 실습기관의 휴무일
4. 실습기관과 학생의 사전 협의에 의해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당일 등
5.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받은 휴일(1개월 기준 1일)

단,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제4조(교육과정 편성 및 취득학점) ① 현장실습수업 과정은 전일제(최소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상으로 최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주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방학 중 실시하는 단기, 중기, 연계현장실습과 학기중(1학기·3학기) 실시하는 장기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은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현장실습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시까지 최대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성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9.11.11.>

| 구 분 | 교과목명(개설학점) | 실습기간 | 신청학점 | | |
|------|------------|--|------------------------------|-------------------|-------------------|
| 국내·외 | 단기현장실습 | 현장실습LINC1~4(3) R&D인턴십1~4(3) | 4주(120시간) 이상 3학점 (전공3) | | |
| | 중기현장실습 | 현장실습LINC5~8(6) R&D인턴십5~8(6) | 8주(240시간) 이상 6학점 (전공6) | | |
| | 연계현장실습 | 창의적설계FT1 | | | |
| | 장기현장실습 | 현장실습7-1,7-2(7)-전선 현장실습8-1,8-2(8)-전선 현장실습9-1,9-2(9)-전선 현장실습10-1,10-2(7)-일선 현장실습11-1,11-2(8)-일선 현장실습12-1,12-2(9)-일선 | 13주(390시간) 이상 | 14학점 (전공7,일선7) | |
| | | R&D인턴십7-1,7-2(7)-전선 R&D인턴십8-1,8-2(8)-전선 R&D인턴십9-1,9-2(9)-전선 R&D인턴십10-1,10-2(7)-일선 R&D인턴십11-1,11-2(8)-일선 R&D인턴십12-1,12-2(9)-일선 | 14주(420시간) 이상 | 16학점 (전공8,일선8) | |
| | | 창업현장실습7-1,7-2(7)-전선 창업현장실습8-1,8-2(8)-전선 창업현장실습9-1,9-2(9)-전선 창업현장실습10-1,10-2(7)-일선 창업현장실습11-1,11-2(8)-일선 창업현장실습12-1,12-2(9)-일선 | 15주(450시간) 이상 | 18학점 (전공9,일선9) | |
| | | 창의적설계FT7-1,7-2(7)-전선 창의적설계FT8-1,8-2(8)-전선 창의적설계FT9-1,9-2(9)-전선 창의적설계FT10-1,10-2(7)-일선 창의적설계FT11-1,11-2(8)-일선 창의적설계FT12-1,12-2(9)-일선 | | | |
| | | 국외 장기현장실습 | | | |
| | | 글로벌현장실습9-1,9-2(9)-전선 글로벌현장실습12-1,12-2(9)-일선 | 18학점 (전선9,일선9) | 현장실습 (12주) | 480시간 (1일 8시간) |
| | | | | 사전교육 | 필수참여(2주) |

④ 제3조의 2의 2항에 따른 국내 장기현장실습 보충기간은 실습기간 종료 후 2주 이내로 한다.

⑤ 장기현장실습의 전공학점 인정범위는 제3항의 제한 범위내에서 당해학기 개설학과의 학년별 전공필수학점과 전공선택학점으로 나누어 인정 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제5조(학생지도 및 학점인정) ① 지도교수는 현장실습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참여학생의 현장실습일지를 수업 종료 후 1주 이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성적은 산업체와 현장지도담당자가 평가한 성적과 대학에서 부과한 과제 성적, 현장파견 지도교수의 평가, 그리고 현장 실습일지의 기록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하며, 현장 실습 평가의 비율은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

1. 산업체 현장지도자의 평가 50%
2. 기타(현장지도, 실습일지 등) 50%

④ 현장실습수업 결과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 Satisfactory(S)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미인정 Unsatisfactory(U) 처리한다.

제6조(현장실습 업체 선정 및 협약) ① 각 학부(과)장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산업체의 장에게 서식에 의거 학생 현장실습을 의뢰한다.

② 국내 현장실습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학부(과)장이 승인한 업체로 선정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2.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4.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수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5. 국외의 경우 전항의 사항에 준하여 선정한다.

③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기간중 학생의 보건·위생·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제6조의2(현장실습업체의 변경) ① 현장실습 중인가가 업체 또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업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7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 신청 자격은 재학중인 자로서 최소 4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편입생은 최소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생)으로 하며, 학기제 현장실습은 연속 2회 신청할 수 없다.(단, 계절제 및 학생창업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이수학점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창의적설계기반 현장실습 신청자격은 3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8조(현장실습수업 신청) ①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절차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현장실습 운영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 및 운영) ①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이 학기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② 국내·외 현장실습 중에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단, 원격교육(가상강좌) 교과목은 이수 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수업 중 사고, 질병, 군입대 등을 사유로 현장실습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수업 포기 신청서를 교학처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업체에도 포기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④ 학기제 현장실습수업을 포기한 자로서 휴학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학칙 제 34 조에 의거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잔여기간이 없는 자는 휴학할 수 없다. 휴학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학기 현장실습수업의 성적은 실격 처리되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학기제 현장실습수업을 포기한 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본 교 학기 개시일과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납입금징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무위반자 조치) 현장실습수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자
2. 고의적으로 실습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종합보고서(출근부, 실습일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1조(현장실습 지도) 현장실습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실습교육의 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교원의 현장 파견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이 불확실하거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복교를 원칙으로 하되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3.01.]

제13조(재택실습) ①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재택실습의 허용범위로는 실습의 출석일 수 및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실습기관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현장실습이 수업(교육과정)으로서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한다.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지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03.01.]

제14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업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03.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운대학교 국내·외현장실습수업운영규정은 경운대학교 국내·외 현장실습학기제수업운영규정으로 대체한다.